

주부의 연금수급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기초하여

Exclusion of Housewives in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South Korea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송호대학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윤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최자경**

Ewha Womens' Univ. Dept. of Consumer & Human Development
Prof. Moon, Sook-Jae

Songho College. Dept. of Preschool Education,
Adjacent Prof. Yoon, So-Young
Ewha Womens' Univ. Dept. of Consumer & Human Development, Doctoral Course
Choi, Ja-Ky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atic fact that most housewives are excluded from receiving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South Korea. The National Pension Plan assigns no value to housework or household production, which in turn discourages full-time housewives from participating voluntarily in the Plan. In this article, I propose to utilize Credit Splitting and Pension Sharing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full-time housewives' economic contribution in the National Pension Plan. In this article, I also discuss the ranges and application methods of the Credit Splitting and Pension Sharing.

For this study, I have analyzed the data of 11,967 unemployed married women living with spouses published in "Research Data on Everyday Life Time Usage"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The value of the full-time housewives' labor varies depending on the methods of estimation. However, all estimated values exceed the average value assigned to the housewives by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It is clear that full-time housewives' unpaid labor contributes a great deal to the formation of household property and wealth, which is a valid reason for Pension Sharing and Credit Splitting. This article also provides logical factors to consider in the process of Pension Sharing and Credit Splitting, which can be used for developing computerized software to determine a full-time housewives' labor value at the time of divorce or for any other purpose.

▲ 주요어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Plan), 분할연금(Pension Sharing), 연금수급권(Credit Splitting)

* 주저자 : 문숙재(sjmoon@ewha.ac.kr)

** 고신저자 : 최자경(jkchoi0812@yahoo.co.kr)

I.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실시된 이래 2002년 현재 1,6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두고, 전국민 연금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 연금시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도 18세미만 60세 이상인 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수급권자, 거액 및 시설보호 대상자,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자,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 포함) 등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용제외자'로 규정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특히 주부의 경우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는 '무직자'로 간주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었지만, 주부의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여 주부의 사회적 지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통계청, 여성부 등의 다양한 노력에서 본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이다. 여성의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생활비 공동 부담의 원칙"이나 민법 제 839조의 2 인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신설은 주부의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인정함으로써 주부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관련법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국민연금에서 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긴 여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홀로 되는 기간이 훨씬 길고, 따라서 노년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통계청이 2001년 7월 발표한 1999년 생명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99년을 기준으로 남자가 71.7세, 여자는 79.2세로 약 7.5년의 차이가 난다. 또한 2000년 현재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29.3세, 여자 26.5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3세 여자는 1.6세가 늘어났으며 남자와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의 차는 약 2.8세이다(통계청, 2000년 「인구동태통계연보」). 이는 여성이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대략 10년 정도를 혼자 노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남성을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비록 임금노동에의 여성의 참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의무가 당연시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경우 도중에 임금노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신이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특징으로 인해 여성은 연금혜택에서 불리하게 되어 노년기의 소득보장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들은 연금수급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연금수혜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은 액수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제도와 여성의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있지 않고서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 봉사, 헌신의 당연한 노동으로 여기며, 특히 가정내 '주부'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강요받는 기혼여성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축소 평가하고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경제적인 보상체계에서 여성은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주부의 연금권 확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주부의 가정내 경제적 기여를 정당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제도에 그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분할연금제도의 두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

1. 국민연금제도와 여성연금권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현황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인 '전체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의 조직화된 체계'로 공적연금의 범위를 보면, 국민연금은 이에 포함되는 제도이다. 연금분야의 정부개입이 각 국에서 보편화된 것은 개별 근로자나 시장을 통해서는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미래통찰력의 부족을 지적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 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된다. 또한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이다. 소득재분배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려는 집합적 결정을 할 때 발생한다. 생애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목표를 갖는 국민연금제도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되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65살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 등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내맡기는 것이 어려워졌다. 국민연금은 노인부양의 주체를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하면서 개인이나 사회적 차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그 목적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2000년 7월에 발표한 '한국과 세계의 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연령층 1백 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불과 10명이지만, 2030년에는 3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노령화지수는 2000년 32.9퍼센트에서 2030년 120.3퍼센트로 증가하게 되어 유년인구 1백 명당 노령인구가 1백20명이 되어 고령화가 상당히 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급속히 진행되는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며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표 1> 연도별 사업장 및 가입자 추이(단위: 개소, 명)

구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도 시	농어촌		
'88.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92.12	5,021,159	120,374	4,977,441	-	-	-	32,238	11,480
'95.12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	1,890,187	48,710	15,760
'96.12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	2,085,568	50,514	15,640
'99. 4	16,268,779	174,496	4,992,716	11,113,148	9,045,812	2,067,336	34,250	128,665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8,739,152	2,083,150	32,868	168,570
'00.12	16,209,581	211,983	5,676,138	10,419,173	8,381,451	2,037,722	34,148	80,122
'01.12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8,132,036	2,048,075	29,982	115,815
'02. 1	16,263,807	254,875	6,005,860	10,106,589	8,072,888	2,083,701	29,863	121,495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국민연금은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족한 이후에 1992년부터 5~9인 사업장에 확대되었고, 1995년 7월에는 군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에게 확대되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개정안은 1998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한 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2) 여성연금권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가족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득을 버는 남편을 중심으로 소득단위를 구성하고, 이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처가 취업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단위로 인정되지만,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남편의 소득 및 연금에 종속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생활이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므로 남편의 퇴직후 수급하는 연금도 남편의 취업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피부양자로서의 처의 위치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남편과 대등한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고, 또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부부관계도 반드시 평생동안 지속되는 관계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의 가족주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김용하, 1997).

<표 2>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

구 분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단위 : 명)
	인원	비율					
계	16,263,807	100.0%	6,005,860	10,106,589	29,863	121,495	
남 자	11,234,808	69.1%	4,262,124	6,899,567	4,227	68,890	
여 자	5,028,999	30.9%	1,743,736	3,207,022	25,636	52,605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2002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여성가입자는 500만 명으로 전체가입자의 30.9%로 남성가입자의 1,123만명과 비교할 때 크게 적은 실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으로 인한 소득보장비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통한 여성의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연금가입률이 낮은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다. 즉 2001년 6월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자의 74.5%보다 낮은 49.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연금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무연금의 문제로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국민연금이 보장하고 있는 노령, 장해,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맞벌이 여성의 노령연금수급에 있어서 자신의 소득에 기초한 노령연금 혹은 남편의 소득에 기초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종종 남편의 소득에 기초한 유족연금이 자신의 소득에 기초한 노령연금보다 높을 수 있다. 맞벌이 여성의 대다수는 불규칙적인 혹은 시간제 고용 때문에 낮은 소득을 가지고거나, 혹은 가족부양 때문에 수년동안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도 하며 혹은 저임금 직종에 주로 고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여성은 본인의 노령연금보다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이 양출한 노령연금권은 상실하게 되어 본인의 양출금은 쓸모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여성의 연금권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검토에서 분석되어진 여성의 연금권 문제는 남성에 비하여 크게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로 이는 여성의 연금가입 대상자의 축소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연금권 문제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의 연금제도가 소득발생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없이는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 주부의 가사노동 생산성과 분할연금

2001년 6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인 '2000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98년 현재 맞벌이 가구 중 반(50.2%)은 '평소 가사 일을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하나 37.8%는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를 돌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남편만 취업한 경우에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일을 하는 경우는 50.8%,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이 약간 분담하는 경우는 44.4%로 나타남으로 가사노동은 대부분 주부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임의가입자'로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의가입자가 되면 수입이 없으므로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보험금도 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를 낼 때,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4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임의가입자의 경우 중위수 표준소득월액 즉, 45등급의 중간 정도인 22등급으로 일괄적으로 정해놓았다. 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납부 보험료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의 산정시 타가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업주부의 노동력의 가치나 생산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다. 즉, 22등급으로 정해놓은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 생산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을 뿐이다. 대신 주부는 가급연금권을 가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의 5%로 정해진 보험료를 지불하여 60세 이후에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금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연금액과 가족수당 성격을 띠는 가급연금액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소득 배우자, 즉,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가급연금액은 연 15만원이다. 이러한 가족수당적인 성격의 연금이 부당성은 개인의 생산적인 노동가치론과 연관시켜 고려해 보았을 때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2001년 7월에 발표된 전국20세 이상 남녀 1,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부의 '한국 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 의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4.9%인 맞벌이부부의 경우, 여성의 가사 부담률이 81.1%로 나

타나 경제활동 여부가 여성의 가사부담을 그다지 많이 줄이지는 않았으며, 전업주부의 가사부담률은 92.7%였다. 가족수당적 가급연금액은 이러한 전업주부를 위하여 연 15만원을 지급, 즉, 1달에 12,500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가급연금액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가급연금액은 연금수급자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무보수 배우자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에는 전업주부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임의가입자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이는 전국민 연금시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그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가족의 생활의 질에 기여를 하지만 전업주부가 직접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자로밖에 가입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전업주부의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은 불투명하게 된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시간적, 금전적으로 평가하면 그것이 임금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업주부를 모두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켜 노후보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에게 주부의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이다. 물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가구내 분업으로 간주하여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취업한 남성배우자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논리를 성립시켜 남성배우자의 소득 가운데 일부는 주부가 가사노동에 전념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가치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권을 주부의 소득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연금권은 남성 배우자에게 부담시키고 수급권을 주부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시 도입되어 1999년 초부터 실시된 제도가 분할연금제도이다.

분할연금제도란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을 경우, 이혼한 여성에게도 분할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전체 여성경제활동인구 가운데 62.7%의 여성이 일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한 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 여성의 연금수급 기회를 넓혔다는 의의를 지닌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던 때보다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이혼시 받게 되는 분할연금은 재산형성에의 기여에 초점을 맞췄다. 보다는 노후생활보장, 즉 부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5년 이상 혼인관계 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1/2을 받게 되지만, 재혼을 할 경우에는 재혼기간동안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만일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주부는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이 제도가 청산적이 아닌 부양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면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해야만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이 되면 수급권은 사라진다.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하여도 노령연금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두 명이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남편이 60세에 도달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도,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되지 못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게다가 만약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남편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은 물론, 분할연금도 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001년 연간 이혼은 13만5천 쌍으로 2000년 12만 쌍에 비하여 1만5천 쌍이 늘어났으며 90년의 4만5천7백 쌍에 비해 3배정도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370쌍이 이혼을 선택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0.2세 여자 36.7세로 지난 91년보다 남자는 3세, 여자는 3.6세가 증가했다. 그러나, 분할연금제도가 99년 도입된 이후 2001년 현재까지 오직 6명만이 이혼할 때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을 반씩 나누어 매월 4만원 ~ 20만원씩 받고 있다(조선일보, 2001). 이 제도는 이혼을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만 내면 배우자와 다툴 필요 없이 간단히 연금을 탈 수 있지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아 사실상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 도입에는 몇 가지 조건을 정해야 한다. 첫째, 연금분할제도를 이혼시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입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둘째, 연금분할대상을 모든 이혼시로 할 것인지, 최소혼인기간을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분할제도를 홀벌이 부부에게만 실시할 것인지,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분할연금제도의 해외사례²⁾

1) 캐나다의 연금수급권분할제도

캐나다의 연금수급권분할제도(Credit Splitting)는 소득비례부문 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전업주부의 보호를 목적으로 1978년 1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도입되었을 때에는 이혼전 혼인기간 조건이 최소 3년이었으며, 합법적으로 결혼하였던 부부들에게만 적용되었다. 만일 1978년 전에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별거상태에 있었다면 연금수급권분할제도(Credit Splitting)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이혼, 또는 혼인무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혼 또는 혼인무효 후, 3년 내에 연금수급권분할(Credit Splitting)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3년 이내에 연금수급권분할(Credit Splitting)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캐나다 연금공단은 부부가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분할연금을 실시할 수 있다. 이후 1987년의 법개정에서는 연금수급권분할제도(Credit Splitting)가 확대실시되었고, 그 규정들이 수급자들에게 유리하게 변화하였다. 만약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을 하거나 혼인무효를 한 경우, 최소 1년간

2) 분할연금의 해외사례는 영어권 나라 중 분할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된 캐나다와 영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속적으로 함께 살았으며, 두 배우자 중 어느 한명이 캐나다 연금공단에 적절한 서류와 함께 이혼사실을 통보하였을 경우, 연금수급권분할(Credit Splitting)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1987년 1월 1일 전에는 3년 이내였던 것에 반하여 기간의 연한이 없어졌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만 하였을 경우에도 연금수급권분할제도(Credit Splitting)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으로 1년간 함께 살았을 경우, 둘째, 최소한 12개월을 별거하였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나 별거한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거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전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거인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기간의 연한은 없다. 사망 시에는, 사망한지 3년 이내에 연금수급권분할(Credit Splitting)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금수급권 분할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1987년 1월 1일 이후에는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의 법률적 이혼이나 혼인무효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게 될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수급권은 반드시 분할되어야만 한다. 첫째, 1986년 6월 4일 이전에는 가입자가 구체적으로 그 날짜 이전에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수급권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했을 경우, 연금수급권분할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협약서가 일반적인 협의사항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수급권분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더 저소득인 자라면, 어느 정도의 연금수급권을 분할받을 수 있다. 1986년 6월 4일 이후에 그러한 협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수급권분할을 포기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은 그 협약서의 제삼자로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연금수급권을 분할할 수 있다. 가입자가 별거를 하였거나, 관습법상의 동거인과의 관계를 마쳤을 경우, 연금수급권분할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전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거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혼 또는 혼인 무효가 아닌, 이러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분할을 6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수급권분할은 기존에 가입된 캐나다 연금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되거나,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연금수급권분할의 영향은 각각의 가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원이고 부인이 전업주부이며 자녀가 3명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결혼생활 20년 후에 이혼을 한다면, 아내는 전업주부로 어떠한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에 보험료를 낸 부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어떠한 연금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 부인은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수급권을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남편이 혼인기간동안 벌어들인 연금수급권을 동등하게 반으로 나누게 된다. 부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의 계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인

이 은퇴연령에 다다랐을 경우 은퇴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될 경우, 장애연금이 수급가능하며,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게되며, 취업을 하여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그녀의 명의로 된 연금계정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훗날 은퇴시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업주부인 부인이 분할연금과는 달리 자신만의 연금수급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인과의 연금수급권분할로 인해 남편의 연금수급권은 감소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의 수급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연금수급권분할 이후에 남편이 일을 지속해 나갈수록, 분할의 영향은 점점 감소할 것이다. 만약 남편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의 보험료 납부는 계속되겠지만, 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할 것이다. 위의 예의 경우는, 부인이 전업주부이므로 연금수급권분할의 영향이 큰 경우였으나, 다른 경우들에는 그 영향이 더 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가 만일 저소득을 벌어들이는 기간동안 이익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Drop out" Provisions, 즉, 저소득 기간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만일 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안 저소득 기간이 겹친다면, 연금수급권분할의 영향은 매우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기간 역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만약 결혼생활을 20년 동안 지속하였고 자녀가 둘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주부가 약간의 저소득 기간을 갖은 후 이혼을 하게 된 예를 살펴본다면, 부인은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 취업을 했었으나 남편보다는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였으며, 그녀는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 취업을 했었으며 첫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직장을 떠나 두 번째 자녀가 7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자녀양육을 전담했으며, 두 번째 자녀가 7세가 되자 다시 취업을 하여 남편과 거의 동등한 임금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부인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에 그녀의 연금을 청구할 경우, 연금수급권분할로 인한 것과 그녀의 소득에 의한 것을 바탕으로 계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연금수급권 분할을 꼭 신청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일어난 법률적 이혼의 경우, 가입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은 단지 이혼을 했다는 '통보'와 주어진 특정 정보(예컨대, 함께 거주한 기간)만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내면 된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한다.

가입자, 가입자의 전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거인이 연금수급권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변호사 등의 대리인이 대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별거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관습

법상의 동반자의 서명이 요구된다. 만약 가입자가 연금수급권분할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나 관습법상의 동반자는 연금수급권분할에 영향을 주는 정보, 예를 들면, 혼인기간, 동거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반자 모두 그 정보의 정확성을 따질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 분할에 관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일 재혼을 하거나, 다른 관습법상의 동거에 들어가도 연금수급권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금수급권이 부양적 성격뿐만이 아닌, 청산적 성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캐나다의 분할연금(Pension Sharing)

캐나다의 분할연금은 우리나라의 분할연금과는 의미가 확연히 다르며 앞서 제시한 연금수급권분할제도(Credit Splitting)와도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다. 연금수급권분할제도는 이혼 후 연금수급권을 분할하는 것으로 각자 독자적인 연금계정이 생기는 반면 우리나라의 분할연금의 경우 연금자체를 반분하여 자신이 원래 연금수급권을 갖고 있을 경우라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반면, 캐나다의 분할연금은 사실 연금 할당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분할연금은 이혼시에만 적용되는 반면,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은 지속적인 혼인관계에 있거나, 관습법상의 관계에 있는 경우,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 또는 다른 연금들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연금분할에 관한 타협을 "할당(Assignment)"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은퇴연금의 할당은, 지속적인 혼인관계나 관습법상의 동반자인 경우, 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반자는 두 배우자의 은퇴연금 또는 다른 기타 연금들을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만일 은퇴연금을 배우자나 관습법상의 동반자와 나누어 수급받고 싶을 경우에는 가입자와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반자 모두 60세 이상이고, 둘 다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의 은퇴연금과 "할당"을 신청했어야 한다. 은퇴연금의 "할당"제도는 부부의 은퇴연금 또는 기타 연금들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연금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혼인기간 중의 "연금할당"은 첫째, 배우자나 관습법상의 동반자와 별거한지 12개월 후, 둘째, 연금에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나 관습법상의 동반자가 기여하게 되는 그 달, 셋째, 가입자가 이혼하는 달, 넷째, 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반자가 사망한 달, 다섯째, 만일 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동반자가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에 연금할당을 취소하여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종료하게 된다.

3) 영국의 연금분할제도

2000년 12월 1일부터 영국에서는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은 물론 연금 또한 나눠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정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사회생활을 희생한 아내들에 대해 남편과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중 연금형성을 함께 한 공로를 인정하여 전남편 연금의 공동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시킨 백서를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내는 이혼법정에서 남편의 연금 중 일정액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다. 이혼하는 아내가 다른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느냐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달라진다. 연금은 영국인들이 노후를 꾸려가는데 가장 큰 재원이기 때문에 이 법제정은 상당한 과급효과가 있었다. 브리스톨대의 가정정책학 교수인 힐러리 랜드는 '새로운 법률은 특히 재산이 많은 남편들로 하여금 이혼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혼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입증하듯이 영국의 경우, 2000년도의 이혼율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낮은 수치의 이혼율의 원인은 첫째, 혼인 자체의 감소이며, 둘째로는 여성들이 2000년 12월에 시행되는 연금분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혼자체를 미뤘다는 점이다. 물론 남성들은 바쁘게 11월 이전에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부인들에 의해 12월까지 미뤄지게 되었다. (The Times, 2000년 11월)

여성에 대한 연금법에서는 남편의 사망시에 여성 자신의 연금 수급권이 아닌 남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기본 은퇴연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인은 남편이 부어놓은 연금수급권으로 부인이 기본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사별한 남자의 경우 역시 그 부인의 연금수급권으로 그의 연금을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기혼여성이라면, 완전히 연금을 부음으로써 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지만, 남편과 부인이 모두 연금수급가능한 연령이 되었을 경우, 부인은 남편의 연금 기여(contributions)에 근거하여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때에는 부인 자신의 이름으로 연금을 받지 않거나, 또는 아주 적은 연금만을 받고 있을 때이다. 이 때 받는 연금은 보통 완벽히 기여했을 때 받는 연금의 60% 정도이다. 따라서 만약 기혼여성이며,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금에 기여한 것이 60% 미만이며, 남편은 100% 다 부었을 경우, 남편의 연금 수급권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받으려면, 자신의 이름으로 받는 연금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연금이 있으면서 남편의 이름을 빌어 두 개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여한 연금이 남편의 이름으로 기여한 연금보다 많다면, 영국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부인에게 부인의 연금을 수급하지, 부인과 남편의 것을 동시에 두 개 수급하지는 않는다. 현재는 기혼 남성은 부인의 연금수급권을 넘겨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2010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전업주부의 분할연금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2) 전업주부의 합리적인 분할연금 도출을 위한 산출과정은 무엇인가?

2. 자료의 분석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통계청(1999)의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파악하여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무보수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 국민계정에 가계부문 생산을 반영하게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된 것이며, 조사기간은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간이다. 조사도구는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이며,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 diary)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항목은 위의 시간일지 이외에 주택의 종류, 입주형태, 주거전용면적, 자가용 보유, 미취학 아동 보육여부 등의 가구관련 사항과 인구학적 특성, 일에 관련된 사항, 고용형태 등의 개인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본규모는 850 조사구의 약 17,000 가구로, 추출단위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실사표본조사구 중에서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에서 추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용 조사구이다. 응답대상은 조사 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 78,576이다.

자료분석을 위해 응답자료 중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 11,967개만을 선정하여 가사노동시간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응답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직업노동량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을 생성시켰다. 가사노동시간량은 식생활, 의 생활, 주생활, 가족 보살피기, 가정관리, 기타의 가사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생성하였고, 이 모두를 합산한 시간량을 가사노동시간량 전체로 보았다.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앞의 자료분석방법에서 밝혔듯이 혼인상태

와 취업유무, 배우자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비취업여성집단, 즉 전업주부인 케이스를 총 11,967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 집단의 특성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47.24%로 가장 많았고, 중졸 16.29%, 초등졸이 14.38%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은 30대가 33.14%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0.91%, 20대가 17.83% 였다. 그리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이들이 38.23%,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는 6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											
변인	범주	N	%	변인	범주	N	%	변인	범주	N	%
교육 수준	무 학	863	7.21	연령	10 대	32	0.27	미취학 차녀	유	4575	38.23
	초등졸	1721	14.38		20 대	2134	17.83		무	7392	61.77
	중 졸	1950	16.29		30 대	3966	33.14		계	11967	100.0
	고 졸	5563	47.24		40 대	2502	20.91				
	초대졸	772	6.45		50 대	1788	14.94				
	대학이상	1008	8.42		60 대	1107	9.25				
	계	11967	100.0		70대이상	438	3.66				
					계	11967	100.0				

2.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과 경제적 가치평가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할연금제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을 가사노동 영역별로 조사하였다. <표 4>에서는 여성의 혼인상태와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의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을 제시한 것이다. 기혼유배우 미취업 여성, 즉 전업주부의 경우, 전체 가사노동시간이 6.69시간이었다. 이 중 식생활이 2.43시간으로 각 가사노동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족보살피기가 1.62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주생활(0.98), 의생활(0.72)의 순이었다.

<표 4> 남성,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사노동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 시간)							
영 역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 족 보살피기	가정관리	기타	전체
혼인상태							
기혼 유배우 미취업여성	2.43	0.72	0.98	1.62	0.47	0.47	6.69

이러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1999년 9월에 조사된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와 같은 해인 1999년 7월에 실시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및 통계청의 1999년 [경제활동인구연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전문가 대체법, 종합적 대체법 그리고 기회비용법 등 가장 일반적인 투입산

출법을 통해 가사노동 가치평가 비율을 추정하여 <표 5>에 제시하였으며 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대체법에 의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식은 아래와 같다.

· 소분류별 가사노동(시간)×대체직종의 시간당 임금율(원)

= 1일 가사노동 가치(원)

· 1일 가사노동가치(원)×30.4(일) =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원)

종합적 대체법에서는 가사노동의 영역을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으로 나누어,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을 각각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과 종합관리자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과 종합관리자의 시간당 임금율을 합한 후, 2로 나눔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금시장에서의 남녀 임금차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된 두 대체직업의 임금율은 각 직종의 남여근로자 임금율을 더한 후 2로 나눈 대표 값을 사용하였다.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사노동의 가치산정은 혼인상태, 연령별, 학력별 구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가치평가방법과는 달리 기회비용법의 경우 성, 연령, 교육수준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의 [1999년 임금구조기본조사](2000)를 사용하여 전 직종에서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임금율을 이용한 평균 임금율을 산정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각각 평균 임금율을 더한 뒤 2로 나누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 임금율³⁾을 적용하였다.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차가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그 가치가 과소 평가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과대 평가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인의 가사노동 숙련도나 가치가 학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학력에 의한 가치산정시에도 이 평균 임금율을 사용하였다.

<표 5> 가치평가방식별 월 가사노동가치평가에 따른 국민

연금의 표준소득월액 등급

(단위: 원)

	전문가 대체비용법	종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월 가사노동 가치평가	1,198,520	1,530,404	1,323,774
표준소득월액 등급	25등급	29등급	26등급

3)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임금율 = 월 급여액 + (연간 특별급여액 / 12) / 평균 근로시간 수

전 직종 남성 근로자의 임금율 = 월 급여액 + (연간 특별급여액 / 12) / 평균 근로시간 수

* 전 직종 임금율 = (여성근로자의 임금율 + 남성 근로자의 임금율) / 2

<표 5>에서는 가사노동가치평가액을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45등급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혼유배우자 미취업여성집단인 전업주부의 경우, 전문가대체비용법, 종합적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을 각각 적용시켜 보았을 때, 각각 1,198520원, 1,530,404원, 1,323,774원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25등급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주부의 노동가치가 임의가입자의 일괄적인 등급인 22등급이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3. 주부의 분할연금액 산정

통계청의 2000년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기혼의 경우 약 48% 정도인데, 이들 여성에 대한 분할연금권의 박탈 또한 불합리한 제도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시간사용조사의 분석결과와 여성부의 ‘한국 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 의식조사’의 결과에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혼 취업여성의 가사 부담률이 81.1%로 나타나 경제활동 여부가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분할연금제도는 맞벌이부부에게까지 실시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부부에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사실상, 1999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연금분할제도는 5년 이상이라는 최소혼인기간을 설정하였으며, 맞벌이 부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혼 시에만 적용하는 매우 초기적인 연금분할제도가 도입되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즉 이혼한 취업 여성이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민연금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취업을 하면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되는데, 이혼한 취업여성의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수급권과 분할연금권을 동시에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때 대부분의 경우, 분할연금권의 보험금의 액수가 더 적기 때문에 분할연금권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수급권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혼 후 두 사람이 모두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함께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충적한 연금수급권을 모두 합산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균등하게 나누어 각자 독자적인 연금청구권을 갖는 것, 즉 주부의 이름으로 새로운 국민연금권을 발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식 1》. 기본연금액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개인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가급연금액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산되는 부가급여로 현재 배우자 연 150,000원, 부모 및 자녀 1인당 연 100,000원이 지급된다.

$$\text{《식 1》 } \text{연금액} = \text{기초연금액} + \text{가급연금액} = 1.8(A+B) \times (1+0.05n/12) + \alpha$$

1.8 : 가입기간 20년(240개월)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A :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0.05 :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연수마다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율(5%)

n : 20년 초과 가입년수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비록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제도가 이혼 시에만 해당되도록 한정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혼인이 지속되는 중에도 주부의 명의로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이혼했을 경우와 결혼이 지속되는 두 경우 모두에 대한 분할연금액 산정식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결과들을 토대로 주부가 이혼했을 경우 분할연금액의 산정과정을 도출하여 보면 《식 2》와 같다. 이는 이혼한 배우자의 가급연금액을 제외한 기본연금액만을 분할한 분할연금액의 산출식이다.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에게 연 15만원, 부모나 자녀에게 연 10만원이 지급되지만, 2명 이상에 대한 가급연금액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였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가급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며, 자녀나 부모에 대한 것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이다.

$$\text{《식 2》 } \left(P \times \frac{T-M}{T} \right) + \left\{ \left(P' \times \frac{M}{T'} \right) \times \frac{1}{2} \right\}$$

이혼시 분할수급권 =

T :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T' :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P :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times (1+0.05n/12)$

P' :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times (1+0.05n/12)$

M : 총 혼인기간월수

《식 2》는 이혼시 분할수급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혼 전에 자신이 쌓은 연금수급권에 혼인기간동안 취득한 예상연금수급권을 반분하여 더한 값을 구하는 것이다. 혼인기간동안 전업주부가 취득한 연금수급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불입한 연금액의 비율을 구하여 이를 2로 나누어준다. 그 후, 이 값에 혼전에 취득한 연금수급권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도입하게 되면,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 전에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면 발생하였을 연금권에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더하여 그 연금수급권을 주부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만약 이혼 후 취업을 하면 그 연금수급권에 더하여 연금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재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라도 자신의 계정에 연금수급권이 쌓여 있으므로 그 수급권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분할연금은 이혼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지속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혼인기간 중에 생성

된 배우자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모두 합하여 반으로 나누고, 그 값을 혼인 전에 자신이 얻은 연금수급권에 더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본식은 《식 3》과 같다.

《식 3》 혼인중 분할연금액 =

$$\left(P \times \frac{T-M}{T} \right) + \left[\left\{ \left(P \times \frac{M}{T} \right) + \left(P' \times \frac{M}{T'} \right) \right\} \times \frac{1}{2} \right]$$

T :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T' :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P :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times (1+0.05n/12)$

P' :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times (1+0.05n/12)$

M : 총 혼인기간월수

물론 혼인기간 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굳이 나누어 지금 받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부의 노동을 인정하여 주부 자신의 이름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식 3》은 남성, 여성의 경우 모두 적용 가능하다.

앞서 논의된 식들을 토대로 혼인기간 동안 또는 이혼 후 받을 분할연금액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한 개발 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부의 혼인여부와 혼인기간 변수를 넣은 후, 이혼시 적용되는 분할연금일 경우, 결혼 전에 취업을 했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연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대입한다. 이때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해당 전년도의 자료로 업데이트 시키도록 한다. 만일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 전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T값이 0이 되므로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반분하는 것만 적용되게 된다. 이혼의 경우가 아닌 혼인기간 중의 연금수급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혼인기간, 그리고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대입하고, 혼인 중에 적용되는 분할연금의 경우 결혼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표 6>에서 제시된 자료 중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를 보면,

5년 미만의 동거 후에 이혼한 비율이 비록 1990년대에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99년 현재에도 가장 높은 비율인 31.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여성들은 이 기간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이혼의 수가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므로 5년 미만의 동거 후 이혼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5년 미만 이혼의 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력이 생기면서 황혼이혼, 즉, 15년 이상 동거 후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상 5년 미만 이혼 비율이 90년에 비해 10% 감소하였지만, 그 수는 오히려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따라서 5년 미만의 동거 후 이혼 부부들의 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외하는 5년 이상이라는 최소혼인기간을 설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은 98년 12월 개정 후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을 경우, 이혼한 여성에게도 분할연금수급권을 부여했으며, 전체 여성경제활동인구 가운데 62.7%의 여성이 일하고 있는 5년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한 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 여성의 연금수급 기회가 넓어졌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던 때보다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이혼시 받게 되는 분할연금은 재산형성에의 기여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노후생활보장, 즉 부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5년 이상 혼인관계 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1/2을 받게 되지만, 재혼을 할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만일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주부는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표 6> 여성의 혼인 및 이혼관련 통계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평균 초혼연령	남	29.6	29.3	29.1	28.9	28.6	28.4	28.4	28.3	28.1	28.1	28.0	27.9
	여	26.8	26.5	26.3	26.1	25.7	25.5	25.4	25.2	25.1	25.0	24.9	24.9
평균 이혼연령	남	40.2	40.1	40.0	39.8	39.1	38.6	38.4	38.1	37.9	37.4	37.4	37.0
	여	36.7	36.6	36.4	36.1	35.3	34.8	34.6	34.2	33.9	33.4	33.3	33.0
평균 재혼연령	남	42.1	42.1	42.2	42.2	40.5	40.2	40.4	39.7	39.6	39.4	39.4	39.5
	여	37.6	37.5	37.5	37.5	36.0	35.5	35.6	35.0	34.8	34.6	34.9	34.8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5년미만	30.5	31.7	31.4	31.5	32.5	33.3	38.7	34.7	35.8	37.3	38.7	40.3
	5-10년	23.9	23.0	22.5	24.0	24.8	25.1	28.3	25.8	26.5	27.5	28.3	29.4
	10-15년	19.4	19.0	19.2	19.5	20.0	20.7	19.6	22.0	21.7	20.7	19.6	18.3
	15-20년	14.9	15.4	15.7	15.6	15.1	9.6	9.0	11.6	10.7	9.6	9.0	8.0
	20년이상	11.3	10.9	10.2	9.3	7.7	4.8	4.4	5.9	5.3	4.8	4.4	3.9
결 혼 수		320105	334303	362673	375613	388591	434911	398484	393121	402593	419774	416872	399312
이 혼 수		135050	119982	118014	116727	91159	79895	68279	65015	59313	53539	49205	45694
이혼/결혼 비율(%)		42.2	35.9	32.5	31.1	23.5	18.4	17.1	16.5	14.7	12.8	11.8	11.4

출처 : 통계청, 「인구통계통계연보」(2002)

앞서 말했듯이 이 제도가 청산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닌 부양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을 하여 분할연금을 신청하여도 노령연금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두 명이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남편이 60세에 도달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도,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되지 못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또한 만약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연금은 물론, 분할연금도 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알아보았으며, 두 번째로 그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할연금 도출을 위한 산출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 사용하여 총 78,576 개 중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 자료 11,967 개를 선정하여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분석하여 본 결과,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사용하였을 때, 1,198,520원으로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소득월액으로 등급을 매겨보면, 25등급이었으며, 종합적대체비용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가사노동가치는 1,530,404원으로 29등급, 기회비용법을 사용했을 때는 1,323,774원으로 26등급이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여성의 무급노동이 남편과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절차를 토대로 이혼을 하게 되거나 또는 혼인기간 중에도 분할연금을 받고자 할 때 분할연금수급권과 분할연금액을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인 산정과정으로 산출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분할연금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주요변수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분할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연금분할제도를 이혼 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재산의 공유가 인정되듯이 연금의 공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혼시의 분할연금의 경우, 최소혼인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최소 혼인기간 12개월, 즉 만 1년으로 낮추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체 이혼부부 중에서 5년 미만의 동거를 해온 부부가 이혼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31.4%를 차지하며, 그 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혼시의 분할연금의 경우, 홀별이 부부에게만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반쪽자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분할연금을 모든 부부에게 정상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1998년 12월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분할연금은, 이혼 후, 신청기간이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없다. 20년 전인 1978년도에 제정된 캐나다의 연금분할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있었지만, 서면으로 두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3년 후에도 연금수급권을 분할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6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기간의 연한이 없어졌다. 1987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혼사실을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에 통보만 하면, 반드시 연금수급권을 분할 받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분할연금의 신청기간을 없애야 한다. 그 신청기간의 의미가 사실상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분할연금은 앞서도 말했지만, 여타의 국가에서는 이혼 시 의무사항처럼 강제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말에 시행된 분할연금제도를 2001년 현재 단 6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가 홍보가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분할연금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강제 실시하되, 부부가 모두 서면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만이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분할연금의 수급시기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만 적용 가능하다. 그것은 가입자가 받게되는 연금이 노령연금이며 그 연금자체를 분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 결혼 연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은 약 3년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남편이 60세가 되어도 부인이 57세라면 부인은 남편이 63세, 자신이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전에 남편이 사망한다면 분할연금의 혜택은 없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의 혜택도 없다. 따라서 노후보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연금을 실시함에 연금 그 자체를 나누지 말고, 1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급권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자마자 부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연금 계정이 생기는 것이며, 취업을 하면 그 연금수급권에 더하여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키워나갈 수 있고, 소득이 없을 경우, 임의가입자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즉 기혼취업여성이 이혼할 경우 분할연금에 관한 것은 다루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이 이혼하였을 때, 취업여성 역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즉,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일시 중단하였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연금을 분할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할연금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금을 유지하며 수혜액을 나누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나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추가적 부담에 관한 문제와 관련비용 부담의 문제 또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연금액을 주부가 나누어 갖는다는 시각 또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에,

여성취업 증가방안을 모색하여 연금이라는 파이 자체를 늘려서 모두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제와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크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변화되었을 때 유발 가능한 여성의 선택의 변화 등에 대한 논의,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이 기혼남성 근로자의 임금요구(asking wage), 또는 노동공급에 미칠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http://www.hrdc-drhc.gc.ca> (CANADA Pension Plan)
<http://www.dol.gov/dol/pwba> (Pension and Welfare Benefits Administration)
<http://www.cpbi-icra.ca> (The Canadian Pension and Benefits Institute)
<http://www.pensionguide.gov.uk> (PensionGuide.co.uk)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thetimes.co.uk> (The Times UK)

□ 접수일 : 2002년 8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2월 17일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1). 국민연금실무편람
 국민연금관리공단(2001).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1999). 국민연금법
 김용하(1997).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보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 보고서
 문숙재(1990). 가정생산(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서울:신광출판사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문숙재, 정영금(1989).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여성연구*, 7(4), 169-187
 문숙재, 정영금(1991a).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31-150
 문숙재, 정영금(1991b).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3-25
 문숙재, 윤소영(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22-146
 문숙재, 윤소영(1998). 가사노동의 정책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I: 가사노동의 측정을 위한 제안. *대한가정학회지* 36(4), 35-48
 신낙균(1997). 주부연금권 확보의 당위성과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이계탁(2000). 우리나라 국민연금 부과방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철(1999). 국민연금제도 확대설시에 따른 발전방향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호(2000).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
 통계청(2001).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여성부(2001). 한국여성의 가정과 일의 양립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조선일보(2001). 황혼이혼 증가한다. 사회면. 2001년 5월 7일자
<http://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